

2024 「한국미술 비평지원」 참여단체 공모 PT심의 결과안내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전문지와 비평가 연계 지원을 통한 비평문화 확산 및 비평가 양성을 위해 2024년 「한국미술 비평지원」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.
그 결과 총 5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, 행정심의를 통과한 5개 단체 중 PT심의를 통해 최종 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.
본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
□ 심의개요

- 심 의 명 : 「2024 한국미술 비평지원」 참여단체 공모 PT심의
- 심의일정 : 2024. 3. 11.(월)
- 심의위원 : 내·외부 전문가 5인 (*가나다순)

연번	이름	소속 및 직책
1	김병수	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
2	양지연	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
3	정 현	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
4	최태만	국민대학교 회화전공 교수
5	김승연	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장

○ 심의기준

심의지표	가중치	세부심의 내용
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목적(사업취지)의 이해도○ 계획, 구성, 성과 등 공모사업 목적과의 부합성
지원단체의 전문성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 수행을 위한 매체 전문성과 적절성○ 사업 수행을 위한 내·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
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	4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계획의 합리성○ 비평문 기획의 참신성○ 기획과 비평가 매칭의 적절성○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
기대효과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 수혜자에 대한 지원 효과○ 사업 효과의 공공성 확보○ 해당 사업성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

□ 선정결과 : 총 3개 단체 선정

연번	지원단체명	매체명
1	아트인포스트	퍼블릭아트
2	(주)월간미술	월간미술
3	(주)에이엠아트	아트인컬처

※ 상기 번호는 e나라도움 신청 순번호

○ PT심의 총평

매체의 성격과 영향력에 기반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된 기획에 따라 매체-비평-작가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음.

다만, 일부 단체의 경우 신진작가 참여비율 조정이 필요하여 조건부 선정하였음.

○ 교부조건 :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 (필요 시 문체부, 예경, 심의위원간 검토 추진)

※ 센터와의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선정단체 의무사항

○ 지원사업을 통해 게재된 지면 또는 웹페이지에 지원 문구 기재

※ 예시) “이 기사(원고)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특별 기고로 게재되었습니다.”

○ e나라도움 교육 보조사업자 집행과정 2시간 및 정산과정 2시간 이수, 수수료증 제출

○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‘불공정행위’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* ‘문화예술용역’이란?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○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

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(사업운영인력 전원 해당)

○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
- 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- 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

-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참석 필수
-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
□ 유의사항
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 - 선정 제외 대상에는 지원단체 뿐 아니라 참여 비평가 및 작가도 포함함
-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평가 및 작가가 친인척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
-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비평사례비 지급 불가
-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-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비평문의 저작권 관련 논란(표절 등)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건에 지출된 원고료 및 게재료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
-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 - *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 - 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-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
 - *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
 - 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 내에서만 가능
-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*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‘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’관련)

*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

-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

-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
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
- 공모요강,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, 사업운영 가이드,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 수정 불가)

향후 일정(안)

-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2024년 3월 중

관련문의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02-708-2219 / hyme9@gokams.or.kr